

2 (第68回－交通第1次)

<p>輸送分擔率을 最大限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.</p> <p>여러 委員님들께서도 높으신 議見과 평소 議政活動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굽은 곳을 바로 펴고, 막힌 곳을 뚫어서 편리하고 안락한 大衆交通施設이 完備되어 폐적한 交通文化가 빠른 時日 内에 定着될 수 있도록 議政活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·면허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시·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</p> <p>- 1984.11.19. 교통부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에서 85.2.28.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습니다.</p> <p>- 본조례의 제3조1항에서 과징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과징금의 5/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토록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시도의 경우 91.5.16. 광주직할시에서 운수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당부에 대한 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</li> <li>○ 91.7.5.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여 같은해 7월에 각시도별로 조례를 개정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나</li> <li>○ 우리시의 경우에는 91.7.5.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지 못하였음.</li> <li>○ 지난해 10.7 ~ 10.21간 감사원 감사시 가산금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</li> <p>- 93.11.15. 교통부에 질의한 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는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절차만을 조례에 위임한 것이고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</p> <p>-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수과징금 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어</p> <li>○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li> <li>○ 동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/li> </ul>
<p>○ 報告事項</p> <p>○ 委員長代理 李元局 먼저 議案擔當官室의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.</p> <p>○ 議案擔當官室 安炳起 議案擔當官室 安炳起입니다.</p> <p>議長으로부터 交通委員會에 回附된 議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94年 1月 31日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以上으로 委員會 報告事項에 대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	
<p>1.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(10時 40分)</p> <p>○ 委員長代理 李元局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먼저 交通局長 나오셔서 該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交通局長 黃哲民 交通局長입니다.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(報 告)</p> <p>○ 먼저 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- 서울시 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</p>	